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0. 9. 14.

발 의 자 : 홍희덕 · 강기갑 · 강성천
곽정숙 · 권영길 · 김상희
김재윤 · 김태원 · 박선숙
박은수 · 유원일 · 이명수
이미경 · 이정희 · 이한성
정동영 · 최문순 · 홍영표

제안이유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 받고 있으나, 1981년 정부는 곰 사육을 위한 일정시설을 갖출 경우 개인도 야생곰을 재수출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1985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3년 7월 9일 상기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음.

개인농가에서 재수출을 위해 사육되고 있던 곰들의 용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인이 수입한 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현재 1,140여 마리의 사육곰이 용담 채취를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음.

현재 사육곰은 재수출이라는 본래 용도 외에 1999년 정부가 마련한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에 따라 25년 이상된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부터는 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10년 이상된 곰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야생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국제적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도 곰을 사육동물이 아닌 야생동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민의 정서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증식금지를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증식금지 조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 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다. 사육곰 매입관리계획에 따라 매입대상이 된 사육곰을 다른 용도

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고, 매입대상이 아닌 사육곰은 용도변경 가능 기한까지는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몰수하고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인공사육 중인 곰의 부산물을 얻기 위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나아가 사육곰이 증식·관리되는 것을 폐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육곰”이란 학술연구 또는 관람 이외의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을 말한다.
2. “사육곰 부산물”이란 사육곰에서 생산된 혈액, 쓸개, 고기, 모피 등 모든 부산물을 말한다.
3. “사육자”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육곰을 기르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육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육곰 학대금지) 누구든지 사육곰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3. 살아있는 상태에서 혈액·쓸개 그 밖에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5조(사육곰 증식금지) ①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곰이 임신 중이거나 출생일부터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육자는 제1항의 증식금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식금지 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식금지 기준·방법, 증식금지 조치결과의 신고방법,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증식금지에 따른 보상) ①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 사육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생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의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제8조(사육곰 매입 및 관리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 이외의 자가 사육곰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육곰의 매입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사육곰의 용도변경 기준·대상·기한 등에 관한 사항
3. 사육곰의 매입 기준·연령·기한·가격과 절차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
4. 매입한 사육곰의 수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곰 사육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매입한 사육곰의 위탁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매입한 사육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사육곰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매년 사육곰의 관리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유지, 관리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육곰 거래금지 등) ① 사육자는 제8조에 따른 매입대상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육자는 제8조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육곰을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증식된 사육곰의 용도변경 등 금지)를 위반하여 증식된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2. 제10조(사육곰 거래금지 등)를 위반하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사육곰 학대금지)를 위반하여 사육곰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7조와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육곰 또는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제12조(몰수 및 폐기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와 제10조를 위반하

여 사육곰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몰수하고 사육곰 부산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몰수·폐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물 폐기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과태료) ① 제5조(사육곰 증식금지)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증식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육곰 증식조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